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40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159호)	박근택의원 등 13인	2024.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195호)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331호)	전용기의원 등 14인	202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655호)	한준호의원 등 12인	2024.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723호)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875호)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165호)	박덕흠의원 등 11인	2024.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4.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272호)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4.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336호)	이건태의원 등 11인	2024.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4.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802호)	서지영의원 등 12인	2024.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648호)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904호)	주철현의원 등 13인	2024.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972호)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570호)	신영대의원 등 10인	2025.4.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5. 11. 26. 자로 직접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
----	------------------------------	----------------	-----------	------------------------------------------------------------------------------------------------------------------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는 위 법률안 14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별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별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p> <p>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p> <p>②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 二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p> <p><삭 제></p> <p>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p> <p>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p>

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例外로 한다.

자, 직계혈족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